

##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

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(☎ 044-202-7927)

□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.

○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※ 7.1 적용직종: 보험설계사,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, 대출 모집인, 학습지 방문 강사, 교육교구 방문 강사, 택배기사,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, 가전제품 배송·설치 기사, 방문판매원, 화물차주, 건설기계 조종사, 방과후 학교강사

1. 적용범위	
적용대상	-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
주요 적용제외	- 노무제공계약 월평균소득 80만원 미만자(22.1월부터 합산 가능) - 만65세 이상(단, 만65세이전부터 고용보험 계속 가입중인 자는 적용 대상)
2. 보험료 징수	
보험료율	- 실업급여 1.4%(특고 0.7%, 사업주 0.7%)
수급 요건	기여요건 -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
	이직사유 - 비자발적 이직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포함)
3. 구직급여 지급	
지급수준	-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%
지급기간	- 120일~270일
소득활동 인정	- 수급기간 중 소득 발생시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구직급여 지급
4. 출산전후(휴가)급여 지급	
기여요건	- 출산(유산·사산)일 직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충족
지급수준	-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%
지급기간	- 90일(다태아의 경우 120일)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정보공개>법령정보>입법예고>  
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### <특고 고용보험 전면 시행>

- 추진배경 :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“전국민 고용보험” 추진
- 주요내용 :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적용
- 시행일 : 2021년 7월 1일

**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**  
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(☎ 044-202-7713, 7705)

- 2021년 7월 1일부터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됩니다. (‘21. 1. 5. 개정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시행)
  - 특고 종사자가 질병·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\*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적용제외 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.
    - \* ①부상·질병, 임신·출산·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, ②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③사업주가 천재지변,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
  - 7. 1. 시행시 기존 적용제외 특고종사자도 일괄적으로 다시 적용되며, 적용제외를 희망하는 특고종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.
- 특고 적용제외 사유 제한으로 사업주 및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한시적(‘21.7.1부터 1년간)으로 고위험·저소득 특고 직종의 산재보험료 경감 제도를 시행합니다.
-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 노동조합법, 근로기준법, 고용보험법, 산재보험법 등 10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

**<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>**

- 추진배경 :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률이 높아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
- 주요내용
  -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엄격히 제한
  - 특고종사자 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
- 시행일 : 2021년 7월 1일

**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**  
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(☎ 044-202-7543, 7545)

□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.

○ 5~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.

- 현행 : 50인 이상 적용
- 개정 : 5인 이상 적용

□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정책자료실 >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및 홍보자료

**<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>**

□ 추진배경 :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

□ 주요내용

○ 주 최대 52시간제 기업 규모·업종별 단계적 시행

- '18.7월 : 300인 이상(특례업종에서 제외된 300인 이상은 '19.7월부터)
- '20.1월 : 50~299인
- '21.7월 : 5~49인

□ 시행일 : 2021년 7월 1일

**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**  
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(☎ 044-202-7513)

- 2021.11.19.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.
  -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,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.
    - ※ 임금명세서 세부 기재 사항은 「근로기준법 시행령」 참조
  -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「전자문서법」에 따른 전자문서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.
  - 임금명세서가 교부되면 근로자는 임금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,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    - ※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-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“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·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”(4.30)

**<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도입>**

- 추진배경 :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로 임금체불 관련 노사간 갈등을 예방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 도모
- 주요내용
  - 사용자가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
  -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,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내역 등이 명시되어야 함
  - 임금명세서는 서면 외에 「전자문서법」에 따른 전자문서로도 교부 가능
- 시행일 : 2021년 11월 19일

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 
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(☎ 044-202-7350)

-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.
  -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(계약당사자)는 고용보험료의 80%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-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정보공개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

<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>

- 추진배경 : 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확대
- 주요내용
  - (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)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,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 예술인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% 지원
- 시행일 : 2021년 7월 1일

기간제·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 
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(☎ 044-202-7471)

- 2021년 7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·파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합니다.

※ 출산전후휴가급여 급여상당액: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잔여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100%(월200만원 상한) 지원

- 기간제·파견근로자의 경우,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,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,
- 2021년 7월 1일부터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을 지급합니다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정책자료>대상자별 정책>여성>출산·육아지원(예정)

<기간제·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>

- 추진배경 : 비정규직 근로자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 및 고용형태상 차별 없는 모성보호제도 활용 정착
- 주요내용 : 기간제·파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,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을 지급
- 시행일 : 2021년 7월 1일

**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**  
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(☎ 044-202-7396)

□ 2021년 7월 6일부터 개정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이 시행됩니다.

- 개정 노조법은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가장 보편적 국제기준인 ILO의 결사의 자유 협약을 반영하면서도 우리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.

구 분	개 정 내 용
노동조합 가입 자격	- 해고자 등 해당 기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(비종사자)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 가능
비종사자인 노조 조합원의 노조활동 원칙	- 비종사자인 조합원은 사업장 내 노조활동시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 - 사업장을 단위로 하는 타임오프 한도 결정, 교섭대표노조 결정,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함
노동조합 임원 자격	-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노조 자체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 - 기업별 노조의 임원은 회사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음
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	-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규정 삭제 - 근로시간면제제도로 통합(일원화)하여 규율 ①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여전히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가능 ②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·사용자 동의는 무효 ③ 사용자가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 지급시 부당노동행위로 규율
단체교섭 관련 제도 개편	- 사용자 동의로 개별교섭시 성실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 부여 - 다양한 교섭방식 활성화를 위한 국가·지자체 노력의무 부여 -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 신설
단체협약 유효기간	- 노사 합의로 최대 3년의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
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	-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원칙 신설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정책자료 > 정책자료실 > 개정 노조법 설명자료 검색

**<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>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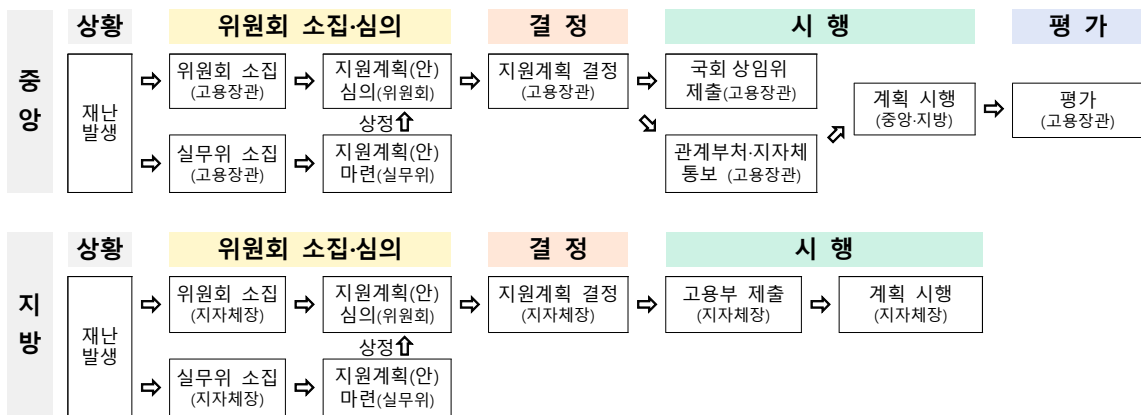
- 추진배경 :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사관계 제도 개선
- 주요내용
  - 노조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노조 설립·가입 가능
  -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규정은 삭제하되, 근로시간면제 제도로 통합(일원화)
  -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(2→3년) / 단체교섭 관련 제도 개선
  -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원칙 확립
- 시행일 : 2021년 7월 6일

##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·지원 절차 신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(☎ 044-202-7527)

- 2021년 11월 19일부터, 재난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·지원 절차가 신설됩니다.
  - 고용노동부에 재난시 필수업무의 범위와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는 '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합니다.
  - 재난시 고용노동부장관의 '필수업무 지정 및 조사자 지원위원회'를 신속하게 소집하고,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, 시행하며
  -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상황에 맞게 필수업무종사자를 지정, 지원할 수 있다.
-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“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·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”(4.30.)

### < 재난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·지원 절차 >

- 정의
  - (필수업무) 재난 발생시 국민의 생명·신체의 보호,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로,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업무
  - (필수업무종사자)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,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
- 절차



□ 시행일 : 2021년 11월 19일



**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**  
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(☎ 044-202-7534)

- 2021년 11월 19일부터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,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.(‘21.5.18. 개정 「근로기준법」).
- 개정법은 11월 19일 이후 발생한 부당해고 등부터 적용됩니다.
- ‘원직복직,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등’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대해 최대 2년간 총 4회, 각 3천만원 한도 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,
- 이를 통해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“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·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”(4.30.)

**<부당해고 이행강제금 부과한도 강화>**

- 추진배경 :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력 강화
- 주요내용
  -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 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
- 시행일 : 2021년 11월 19일

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 
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(☎ 044-202-7539)

- 2021년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신설됩니다.
  - 사용자(사용자의 「민법」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포함)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,
  -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, 피해근로자 보호,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
  -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근로자 등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“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” 보도자료(21.3.24.)

<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>

- 추진배경 :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
- 주요내용
  -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(1천만원 이하)를 부과
  -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, 피해근로자 보호,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
- 시행일 : 2021년 10월 14일

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 
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(☎ 044-202-7563)

- 2021년 10월 14일부터 재직근로자도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 
(‘21. 4. 13. 개정 「임금채권보장법」 시행)
  - 또한, 체불 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“체불 임금등·사업주 확인서”를 발급받아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면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  - 2021년 10월 14일부터 ‘체당금’이라는 용어가 ‘체불 임금등 대지급금(약칭:대지급금)’으로 변경됩니다.
-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“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” 보도자료(‘21.3.24.)

<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>

- 추진배경 : 체불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소액체당금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절차 간소화
- 주요내용
  - 소액체당금 지급대상 확대: (현행) 퇴직자 → (개정) 퇴직자 및 재직자
  -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
    - (현행)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소액체당금 지급(약 7개월 소요)
    - (개정)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·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액체당금 지급(약 2개월 소요)
- 시행일 : 2021년 10월 14일

**소방·교육(조교, 교육전문직원) 및 퇴직 공무원 등,  
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허용**  
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(☎ 044-202-7652)

- 개정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.
- 구체적으로는 그간 6급 이하 공무원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던 직급제한을 폐지\*하고, 소방·교육 및 퇴직 공무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였습니다.
  - ※ 다만, 법 개정 이후에도 ‘지휘·감독자’ 등 직무에 따른 가입 제한은 기존과 동일
-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.
-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정책자료실>개정 공무원·교원노조법 설명자료

**<공무원노동조합 가입범위 확대>**

- 추진배경 :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확대
- 주요내용
  - 직급에 따른 노동조합 가입 제한 폐지
    - \* 다만, 법 개정 이후에도 ‘지휘·감독자’ 등 직무에 따른 가입 제한은 기존과 동일하므로, 실제로는 5급 이상 중 실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 노조가입이 가능
  - 소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(조교, 교육전문직원\*)의 노조가입 허용
    - \*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장학관, 장학사, 교육연구관, 교육연구사를 말함
  - 노조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(공무원노조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\*)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로서, 노조 규약으로 정하는 자의 노조 가입 허용
    - \* 일반직공무원, 외무영사직렬·외교정보기술직렬, 소방·교육공무원, 별정직공무원
- 시 행 일 : 2021년 7월 6일

**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**  
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(☎ 044-202-7656)

- 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해집니다.
- 이번 법 개정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법 개정예 따라 퇴직 교원도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-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.
-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정책자료실>개정 공무원·교원노조법 설명자료

**<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>**

- 추진배경 :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
- 주요내용 : 퇴직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
- 시 행 일 : 2021년 7월 6일

**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**  
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(☎ 044-202-7507)

□ 지자체에 관할지역의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·시행 책무를 부여하고, 지자체 장이 자체 계획의 수립, 교육,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
○ 개정내용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제·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

**<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>**

□ 추진배경

○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

□ 주요내용

○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및 관할지역 내의 산재예방 대책 수립·시행 책무를 규정  
○ 산재예방 계획 수립, 교육, 홍보, 사업장 지도 등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정부의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 
- 지자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음

□ 시 행 일 : 2021년 11월 19일

**「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·위험물질  
규정량 조정」 5인 미만 사업장 시행**  
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(☎ 044-202-7754)

- 화재·폭발·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공정 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의 변경된 규정량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오는 2021년 7월 16일 부터 적용·시행 됩니다.  
※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1월16일부터 기시행

- 따라서, 변경된 규정량\*이상으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·취급·저장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·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
\* PSM 규정량 조정(산안법 시행령 별표13 개정):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을 위험도에 따라 재조정(현행보다 하향 18종, 상향 18종, 현행과 동일 15종)

↳ 또한 부식성 액체(염산, 황산, 암모니아수 등) 농도기준 조정 및 배관을 통해 공급받는 연료용 도시가스의 규정량도 일부 조정

-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지역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)으로 공정 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.

<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문의 연락처>

명칭	소재지	연락처	관할지역
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	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230	031-364-7510	서울, 인천, 경기, 강원
경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	울산시 울주군 처용산업단지4길 51	052-228-5840	부산, 울산, 경남
경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	경북 구미시 산동면 송백로 421	054-459-1150	대구, 경북
전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	전남 여수시 중흥2로 10	061-690-1660	광주, 전남, 제주
전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	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78길 287	063-839-5260	전북
충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	충남 서산시 대신읍 명지1로 213	041-661-5841	대전, 세종, 충남
충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	충북 충주시 대림로 85	043-870-5960	충북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정보공개>법령정보>입법예고>  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안

**<「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·위험물질 규정량 조정」 시행 >**

- 추진배경 : 공정안전보고서 대상물질 규정량을 유해·위험성 및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하여 규제 형평성 제고
- 주요내용
  -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(별표 13)을 위험도에 따라 재조정(현행보다 하향(강화) 18종, 상향(완화) 18종, 현행과 동일 15종)
- 시행일 : 2021년 7월 16일(상시근로자 5명 미만)

**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**  
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(☎ 044-202-7716)

□ 2021년 6월 9일부터 산재노동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중 **과다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으로부터 환불**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※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41조의2 신설

- 산업재해 후 발생한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의료기관에서 산재노동자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.
- 산재노동자가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요청하면, 심사를 통하여 과다 청구된 금액을 의료기관이 환불하도록 합니다.
- 의료기관에서 산재노동자에게 환불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요청한 사람에게 환불하여 드립니다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보도참고자료>

산재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

**<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>**

- **추진배경** : 산재노동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해당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권리구제 및 경제부담 완화
- **주요내용**
  -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를 공단에 확인 요청
  -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임에도 과다하게 부담한 비용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또는 공단에서 반환
- **시행일** : 2021년 6월 9일



**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**  
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(☎ 044-202-7714)

- 소음성 난청을 보다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개선됩니다.
  - 소음성 난청은 업무장소에서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.
  - 기존에는 청력검사를 3~7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, 5가지 검사요건 충족, 미충족시 재검사 실시 등 업무상 질병 인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.
  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(제34조제3항 별표3)을 개정하여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 처리소요 기간이 단축됩니다.

- ① (검사주기 단축) 現 3~7일간 간격 → 改 48시간
- ② (재검사 실시요건 축소) 現 5가지 → 改 3가지
- ③ (재검사 생략요건 신설) 새로운 검사방법\*으로 기존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재검사를 생략  
\* 청성뇌간반응검사, 어음청력검사, 임피던스청력검사 등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·의결(6.1)

**<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 >**

- 추진배경: 발전된 의료기술 반영한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으로 신속·공정한 산재보상
- 주요내용: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①청력검사주기 단축, ②재검사 실시요건 축소, ③재검사 생략요건 신설
- 시행일: 2021년 6월 8일

「신·구 대비표」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			관계 부서
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설	<input type="checkbox"/>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시행(7.1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2개 직종(보험설계사, 신용카드모집인, 대출모집인, 학습지강사, 방문강사, 택배기사, 가전제품배송기사, 대여제품방문점검직원, 방문판매원, 화물차주, 건설기계종사자, 방과후강사)</li> <li>특고 대상 고용보험 시행</li> <li>○ 고용보험 적용에 따라 특고도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음</li> </ul> <p>☞ (참고)고용노동부 홈페이지&gt; 정보공개&gt;법령정보&gt;입법예고&gt;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</p>	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('21.7.1.)
			고용노동부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단 (044-202-7927)
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	<input type="checkbox"/>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특고종사자가 원하는 경우 사유제한 없이 가능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 제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원칙) 특고 산재보험 당연적용</li> <li>○ (예외) 다음의 사유로만 적용 제외 신청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①부상·질병, 임신·출산·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</li> <li>- ②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</li> <li>- ③사업주가 천재지변,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</li> </ul> </li> </ul> <input type="checkbox"/> 고위험·저소득 특고종사자 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 <p>☞ (참고) 고용노동부홈페이지&gt; 보도자료&gt;노동조합법, 근기법, 고용보험법, 산재보험법 등 10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또는 "산재보험법" 및 "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" 시행령.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</p>	산업재해 보상보험법('21.7.1.)
			고용노동부 산재보상 정책과 (044-202-7713,7705)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			관계 부서
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	<input type="checkbox"/> 주 최대 52시간제 <input type="checkbox"/> 50인 이상 적용	<input type="checkbox"/> 주 최대 52시간제 <input type="checkbox"/> 5인 이상 적용  <a href="#">☞ (참고)고용노동부 홈페이지&gt;정책자료&gt;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홍보 자료</a>	근로기준법 ('21.7.1) 고용노동부 임금근로 시간과 (044-202-7545)
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설	<input type="checkbox"/>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도입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 <input type="checkbox"/>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 및 계산방법,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내역 등이 명시되어야 함 <input type="checkbox"/> 임금명세서는 서면 외에 「전자문서법」에 따른 전자 문서로도 교부 가능  <a href="#">☞ (참고)고용노동부 홈페이지&gt;보도자료&gt;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법률안 국회 본의회 통과</a>	근로기준법 ('21.11.19.)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 (044-202-7513)
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설	<input type="checkbox"/>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<input type="checkbox"/>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,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% 지원  <a href="#">☞ (참고)고용노동부 홈페이지&gt;정보공개&gt;법령정보&gt;훈령·예규·고시</a>	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('21.7.1.) 고용노동부 고용지원 실업급여과 (044-202-7350)
기간제·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설	<input type="checkbox"/> 기간제·파견 근로자가 출산 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,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 <a href="#">☞ (참고)고용노동부 홈페이지&gt;정책자료&gt;대상자별 정책&gt;여성&gt;출산육아지원</a>	고용보험법 ('21.7.1.) 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 (044-202-7471)

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			관계 부서
필수업무종사자 보호·지원 절차 신설	□ 신설	<input type="checkbox"/> 평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재난 유형별 필수업무 및 종사자 실태조사</li> <li>○ “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” 구성·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고용노동부 소속, 정부·자치단체·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 15인 이내</li> <li>- 각 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</li> </ul> </li> </ul>	필수업무 종사자법 (’21.11.19.)
		<input type="checkbox"/> 재난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위원회 회의 소집, 필수업무 및 종사자 범위 지정, 지원 계획 심의 및 수립·시행</li> </ul> <input type="checkbox"/> 종료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원계획 이행 등 평가</li> <li>○ 우수기관·단체 포상·평가 등</li> </ul> <p>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&gt; 보도자료&gt;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보도자료</p>	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 (044-202-7527)
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한도 상향	□ 제33조(이행강제금)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(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<u>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</u> 을 부과한다.	□ 제33조(이행강제금)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(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<u>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</u> 을 부과한다.	근로기준법(’21.11.19.)
		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 보도자료>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보도자료	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 (044-202-7534)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			관계 부서
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	<input type="checkbox"/>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,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설 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설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일 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용자(사용자의 「민법」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)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, 피해 근로자 보호,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,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 보도자료>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의회 통과	근로기준법 ('21.10.14.)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 (044-202-7539)
	<input type="checkbox"/> 퇴직근로자에 대해서만 체당금 지급  <input type="checkbox"/> 법원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소액체당금 지급  <input type="checkbox"/> '체당금'이라는 용어 사용	<input type="checkbox"/> 재직근로자에 대해서도 소액체당금 지급  <input type="checkbox"/>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·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액체당금 지급  <input type="checkbox"/> '체당금'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(약칭:대지급금)으로 변경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 보도자료>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의회 통과	임금채권 보장법 ('21.10.14.)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복지과 (044-202-7563)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			관계 부서
공무원노동조합 가입범위 확대	<input type="checkbox"/>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<input type="checkbox"/>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<input type="checkbox"/>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·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<input type="checkbox"/>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	<input type="checkbox"/>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직공무원 <input type="checkbox"/>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 직렬·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,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(다만, 교원은 제외한다) <input type="checkbox"/> 별정직공무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 <a href="#">☞ (참고)고용노동부 홈페이지&gt;정책자료&gt;개정 공무원·교원 노조법 설명자료</a>	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('21.7.6.)
			고용노동부 공무원 노사관계과 (044-202-7652)
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	<input type="checkbox"/>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, 초·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,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(현직교원)만 노조 가입허용 <input type="checkbox"/>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봄	<input type="checkbox"/> 교원 및 “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규약으로 정하는 사람”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 <a href="#">☞ (참고)고용노동부 홈페이지&gt;정책자료&gt;개정 공무원·교원 노조법 설명자료</a>	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('21.7.6.)
			고용노동부 공무원 노사관계과 (044-202-7656)
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설	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의 근거를 마련함 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및 관할 지역 내의 산재예방 대책 수립·시행 책무를 규정 (제4조의2) <input type="checkbox"/> 산재예방 계획 수립, 교육, 홍보, 사업장 지도 등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정부의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(제4조의3)  <a href="#">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&gt;보도자료&gt;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·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</a>	산업안전보건법 ('21.11.19.)
			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(044-202-7697)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			관계 부서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·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시행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51종의 규정량을 규정 (산안법 시행령 별표 10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 위험물질 51종의 규정량을 위험도에 따라 조정</p> <p>* <b>상향(완화) 18종:</b> 포스핀, 삼불화 붕소, 염소 트리플루오르화, 일산화질소, 붕소 트리염화물, 브롬화 수소,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, 메틸 이소시아네이트,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, 실란(Silane),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, 이황화탄소, 염화 티오닐,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, 과산화수소(중량 52% 이상), 불산, 질산, 암모니아수</p> <p>* <b>하향(강화) 18종:</b> 포스겐, 시안화 수소, 불소, 염소, 염화수소(무수 염산), 삼산화황, 암모니아, 이산화황, 브롬, 툴루엔다이소시아네이트, 염화벤질, 디클로로실란, 산화 에틸렌, 수소, 아크릴로니트릴, 클로로술폰산, 삼염화인, 발연황산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부식성 액체에 대한 농도 기준 및 배관을 통해 공급 받는 연료용 도시가스의 규정량도 일부 조정</p> <p>* <b>농도조정:</b> 불산, 황산, 염산, 암모니아수</p> <p>* 사업장 외부로 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저압으로 사용되는 연료용 도시가스(1일 5,000 Kg → 1일 50,000 Kg)</p> <p>☞ (참고) <a href="#">고용노동부 홈페이지&gt;정보공개&gt;법령정보&gt;입법예고&gt;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안</a></p>	<p>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(5인 이상 '21.1.16 / <b>5인 미만</b> '21.7.16)</p>
			<p>고용노동부 화학사고 예방과 (044-202-7754)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도입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신설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요청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임에도 과다하게 부담한 비용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반환</p> <p>☞ (참고) <a href="#">고용노동부 홈페이지&gt;보도참고자료&gt;남녀고용평등법, 근로복지기본법, 산재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</a></p>	<p>산업재해보상보험법 ('21.6.9.)</p>
<p>고용노동부 산재보상 정책과 (044-202-7716)</p>			



